

THE WEALTH GUIDE

2025 Vol.4



Part.1 노후

상속세법 개정 예정, 자녀 많을수록 유리

상속세법 개정 예정, 자녀 많을수록 유리

한화생명 정하나 수석연구원

arihana@hanwh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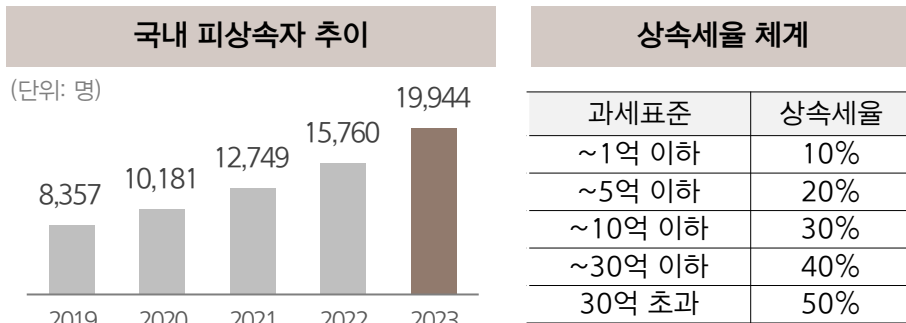
(작성일 : 2025.3.31)

Summary

- 상속세 이슈가 대중화된 가운데, 조세 형평성을 위해 논의되어 온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 전체 유산에 대해서가 아닌, 「상속인(받는 사람)별」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개인별 공제 · 세율 적용 · 세액 결정
- 자녀 등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 기대, 2028년 시행 (법률 통과시)에 앞서 효과적인 상속 전략 준비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예고 :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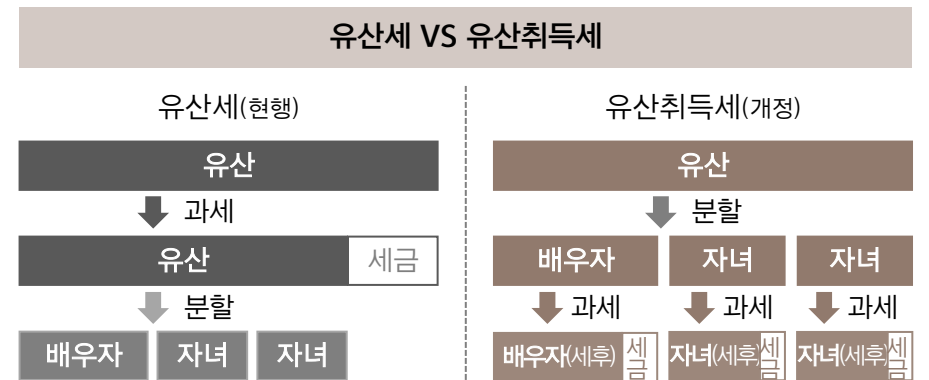
-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미국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사망으로 시작되는 세금 ‘상속세’는 자산가에게 피할 수 없는 이슈
- 상속세 부과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019년 8천여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2만여명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베이비부머 고령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속 증가 전망. 누구도 사망 시기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기 때문에, 상속세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 대비 필요
-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 발표**



* 자료: (좌) 국세청 (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율: 누진공제 미반영)

‘상속인’ 중심으로 계산하여 받은 만큼 세금 부담

- 유산취득세 방식의 핵심은 **상속인(받는 사람)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비 형평성 높음.
- 유산을 먼저 상속인별 분할한 후 각 취득재산 기준으로 개별 공제 후 과세하게 되며, 상속세율은 변경되지 않음. 따라서 ① **과세대상 재산 범위** ② **공제기준 변경**으로, 상속 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금번 제도 변경의 포인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과세범위


공제기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피상속인의 전세계 상속재산에 과세

- 국내외에 다양한 재산을 가진 경우 현행보다 과세대상 범위가 커질 수 있음. 현재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소재 상속재산만 과세함.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 즉 일부 언론에 보도된 ‘상속세 0원’ 사례와 달리, 새 과세방식 적용시 과세대상 확대로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유념

과세대상 개정내용 및 사례

유산세(현행)			유산취득세(개정)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인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소재 상속재산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재산
비거주자			비거주자		

 (사례) 미국 거주자인 부친 사망시 한국재산 10억원, 미국재산 20억원이며 상속인 1인(자녀)는 한국 거주자일 경우 ※ 누진공제 미반영 가정

	상속재산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현행	10억(국내재산)	5억원	5억원	20%	1억원
개정	30억(전세계자산)	5억원	25억원	40%	10억원

과세범위

공제기준

사전증여 재산은 각자 증여받은 만큼만 합산




-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시점과 피상속인 사망시점간 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됨. 현행상 상속인은 최근 10년 이내, 수유자* 등은 5년 이내 증여재산까지 합산.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 최근 증여한 금액도(예: 기부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하기도 함.

※ 수유자: 법정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으로 지정되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르면 상속인·수유자 모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 본인이 받지 않은 기부금 등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음**(증여 당시 증여세 부과로 종결).

사전증여 합산 사례

 (사례) 피상속인 사망 3년 전 사회복지법인에 25억원 기부금 영수증 없이 기부, 상속인 1인(자녀)가 15억원 상속받을 경우 ※ 누진공제 미반영 가정

현행은 25억 기부금영수증 미발급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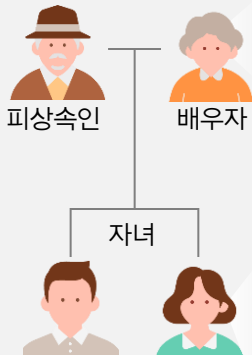
	상속재산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현행	15억+25억=40억	5억원	35억원	50%	17.5억원
개정	15억	5억원	10억원	30%	3.0억원

과세범위

공제기준

인적공제 상황 : 배우자 10억까지 실제상속분, 자녀당 5억 공제

- 현행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적용하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개별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 공제

상속재산 10억 이하이면, 법정상속분 관계없이 전액 공제
 (현행) 5억원 ~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개편) 실제상속분(10억까지) ~ min(법정상속분, 30억원)

자녀 등 기타 인적공제

[상속인]

(현행)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개편) 직계존비속: 5억원
 그 외: 2억원 **인당**
 ※ 미성년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는 현행과 동일

[수유자]

(개편)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10억)

직계존비속 상속인 限, 10억 미달액만큼 추가공제 가능

- (사례1) 상속재산 18억원을 배우자 9억, 자녀 3명이 각 3억씩 상속한 경우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9억 전액 공제 가능

상속재산		현행 공제액	개정 공제액
배우자	9억	배우자공제 6억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9억
자녀A	3억		3억
자녀B	3억		3억
자녀C	3억		3억
합계	18억	공제 11억(과표 7억) <	공제 18억(과표 0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18억원 × 1.5/4.5 = 6억

- (사례2)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 변화

구분	현행 공제액	개정 공제액
자녀A	일괄공제 5억 적용 (자녀공제액 < 일괄공제)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0.4억(미성년자 공제 4년 × 0.1) = 5.4억
자녀B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0.9억(미성년자 공제 9년 × 0.1) = 5.9억
합계	공제 5억 <	공제 11.3억

※ 미성년 추가공제 = 19세까지 잔여연수 × 0.1억 추가

- (사례3)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 3억, 자녀(1인) 7억 상속한 경우, 자녀공제 5억임에도 총 공제액이 8억이므로 미달 2억을 자녀 상속재산에서 추가 공제

상속재산		현행 공제액	개정 공제액
배우자	3억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3억
자녀	7억		직계존비속 5억 + 최저한 추가공제 2억
합계	10억	공제 10억(상속세 0원) =	공제 10억(상속세 0원)

과세범위

공제기준

가업상속공제는

실제 가업 승계한 상속인에게만 적용

-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당을 물적 공제하는 제도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현황과 같이 공제하나 **실제 가업자산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 경영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상속세로 계산하므로, **가업재산 미승계 상속인은 그외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과다한 상속세 발생할 수 있음.**

가업상속공제 사례



유산세(현행)

상속재산 1,000억
- 가업상속공제 600억

과세표준 400억
× 상속세율 50%

상속세 200억
납세의무자 **자녀 A, B**

유산취득세(개정)

자녀A	자녀B
상속재산 600억 - 가업상속공제 600억	상속재산 400억 - 가업상속공제 없음
-----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 과세표준 400억 × 상속세율 50% ----- 상속세 200억 납세의무자 자녀 B

※ 인적공제 미반영,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할까?

효과적인 '상속 전략' 필요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 발생. 재산이 분할되면서 과세 대상금액이 줄어들고, 인적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
- 연내 유산취득세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절세를 고려한 상속인 중심의 효과적 상속·증여 전략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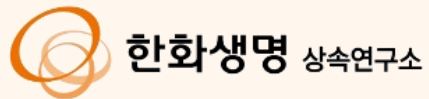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상속세 과세방식 실효세율* 변화

(단위: %)

상속인 및 방식		상속재산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500억
배우자+자녀1	유산세	-	2.5	5.0	8.8	27.9	45.6
	유산취득세	-	2.5	5.0	8.8	23.3	44.7
배우자+자녀2	유산세	-	6.6	10.8	15.7	27.9	45.6
	유산취득세	-	0.7	4.1	8.8	19.2	43.3
배우자+자녀3	유산세	-	9.5	14.7	19.4	27.9	45.6
	유산취득세	-	-	2.4	7.4	16.4	41.8
배우자+자녀4	유산세	-	11.3	17.1	22.2	29.3	45.6
	유산취득세	-	-	0.6	5.8	14.7	40.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2025.3

* 실효세율= (세액공제 전)산출세액/상속재산가액, 상속비율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가정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